덕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2공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사천시 고시 제2022-15(2022.01.27.)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9(2023.07.17.)호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덕곡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덕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52-1번지 일원	2022. 1. 27. ~ 2032. 01. 26.

*** 추후 1공구 및 2공구는 별도 분리되어 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소재지 지번	
토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9필지, 79169㎡)	441-1, 442-1, 443-2, 443-3, 447-1, 447-2, 448, 449-3, 450, 451, 452-1, 453-1, 454, 455, 456, 457-1, 457-2,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0-4, 471, 501-6, 501-7, 543-4, 544, 545, 546-2, 산32-3, 산32-6, 산34-29, 산34-30, 신34-31, 산34-32, 산34-33, 산34-15, 산34-21, 산34-24, 산 34-28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LH 홈페이지 → 사업소개 → 도시조성사업 → 손실보상 → 보상공고] ○ 토지·물건의 세부 내용은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 상기 세목 중 일부는 분할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11. 06.(금) ~ 2026. 11. 20.(금) 10:00 ~ 17:00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팀, ☎ 055-210-8372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3층

○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 055-831-3415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행정동 4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일정(예정)

- 2026. 01월 : 감정평가 실시
- 2027. 02월 : 보상금 통보 및 협의계약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실시 이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본인소유의 토지 및 물건 이외의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천 덕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내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 보상담당(055-210-837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팀**(☎ : 055-210-8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해당 내용은 [LH 홈페이지 → 사업소개 → 도시조성사업 → 손실보상 → 보상공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